

「奎章閣志」의 편찬과 19세기 奎章閣 서적보관제도

The Compilation of *Kyujanggakji* and the Book Storage System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Joseon Dynasty

南 權 熙 (Nam, Kwon-Heui)*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李 鈺의 奎章閣賦 |
| 2. 「奎章閣志」의 編纂과 制度確立 | 6. 맺음말 |
| 3. 純祖代의 書籍保管制度 | <참고문헌> |
| 4. 藏書處 記錄의 分析 | |

<초 록>

이 연구는 규장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작성된 「奎章閣志」의 편성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더불어 순조조의 서적 보관제도로서 서고의 기능 및 당대의 서적보관 장소인 열고관, 주자소, 이문원 등의 기록에 대하여 정리하여 교서관과의 통합 문제와 각신의 겸임문제, 재정문제, 제도의 규정 및 閣誌의 수정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순조조의 서적 관리제도로 의춘문고의 기능이나 奉謨堂의 장서를 보관하였던 이문원의 기록 및 주자소 내 십자각의 장서처로서의 기능에 대하여도 새롭게 기록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의 기록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정조 9(1785)년에 편찬된 李鈺의 奎章閣賦의 기록을 통하여 규장각의 성립이나 중국서적의 보관제도 및 서고, 서향각, 열고관, 개유와 등 장서 소장처에 대한 제도 전반적인 모습을 재고할 수 있었다.

要語 : 奎章閣志, 서적관리제도, 의춘문고, 주자소, 李鈺, 奎章閣賦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kwhe@hanmail.net)

접수일: 2008년 9월 3일 최초심사일: 2008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19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verall system of storing books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the compilation of *Kyujanggakji* published in the eighteenth century and *Kyujanggakbu* written by (Yi Ok; 李鈺, 1760-1812). The major findings from the analysis of *Kyujanggakji* compiled as the basic resource for operating Kyujanggak and the documents related to other institutions are as follows:

① *Kyujanggakji* was compiled by seven famous scholars and accurately revised by six revisers. It means that its publishing was done with strict review and careful revision.

② *Kyujanggakji* documented such issues as its merger with Kyoseogwan, finances, concurrent assignment of officials in charge, rules and regulations, and correction of *Gakji*.

③ Records were added about such institutions as Seohyanggak(書香閣), Uimoonwon(摛文院), 宜春門庫(Uichunmoongo), Gaeyoowa(皆有窩), Yeolgogwan(閔古館) and others which had also kept books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正祖) and King Soonjo(純祖).

④ Yi Ok(李鈺, 1760-1812)'s literary work *Kyujanggakbu* documented the establishment of Kyujanggak, the storage system for Chinese books, and the general features and operations of the above mentioned institutions.

Key words : Kyujanggakji, Book management system, Uichunmoongo, 李鈺, Kyujanggakbu

1. 머리말

이 연구는 규장각의 운영 편람인 「奎章閣志」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정비와 그 바탕위에 전개된 규장각제도가 정조를 거쳐 다음 시기인 순조대에 어떻게 전승되어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에서 국가주도로 편찬된 사료가 아닌 개인의 자료 중에서 규장각의 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한 당대의 문인인 이옥(1760—1812)의 작품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규장각의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와 성격, 개별 장서처, 소장 자료, 서목 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선행의 여러 연구를 통하여 상당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중 「奎章閣志」의 연구는 李離和¹⁾, 安光來²⁾ 등에 의하여 대부분의 윤곽이 드러나 있는 실정이지만 여기서는 초초본, 재초본 등 거듭된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제도나 정조의 관심 등을 살펴보았다.

또 순조대의 규장각과 궁중의 서적보관처에 관한 내용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창설이후 25년이 경과하고 또 정조의 각별한 노력이 사라진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다루어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왕실도서의 수장에 대한 李鍾默³⁾ 등의 개괄적인 연구 등이 있으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언급이나 조망보다는 이 분야 연구에서 구체성을 보태고 좀더 본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필자가 진행 중인 규장각 제도사 연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1) 李離和, “奎章閣小考: 奎章閣志를 중심으로 본 概觀,” 『奎章閣』 第3輯(1979. 12), 149-165.

2) 安光來, “甲辰新編『奎章閣志』研究: 圖書館의 機能과 司書의 役割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6).

3) 李鍾默, “조선시대 왕실도서의 수장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6호(2002. 12), 5-39.

2. 「奎章閣志」의 編纂과 制度確立

규장각의 성립과 더불어 의식을 비롯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던 정조는 원년 4월 15일부터 규장각의 운영을 위하여 기초가 되는 책의 작성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운영편람에 해당되는 성문화된 규정은 쉽게 마련되지 못한 채 그로부터 8년이 되던 정조 8(1784)년에 이르러서야 제도와 절차, 규칙 등이 완비된 「奎章閣志」의 간행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도의 정비로 이어진 「奎章閣志」의 간행이 어떠한 경과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奎章閣志」의 편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그 책의 재초본(실은 초초본)에 의하면 정조 2(1778)년에 서명응을 비롯한 7인의 편찬자와 6인의 교열자가 선정되어 책을 편찬하도록 명하였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이루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조 3(1779)년 가을에 초초본이 나오고 7(1783)년 가을에서 8(1784, 갑진)년 봄 사이의 재초본에 이어 그해 여름에 최종의 완성된 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初草本의 성립

정조 즉위년 3월 19일에 규장각의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어 4월 10일에는 御書閣의 上樑文을 승지에게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으며 같은 달 27일에 상량되었다.

「日省錄」의 즉위년 7월 11일에 정조가 御書閣의 역사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정민시가 20일 경이면 역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한 후 예정된 날짜인 20일에 營建都監에서 규장각의 공역을 모두 마쳤다고 하므로 관계자들을 시상하였다.

이러한 규장각의 성립에는 정조의 우문정책 의지가 「內閣日曆」의 여러 곳에

수록되어 있으며 즉위년 9월 19일에 행해진 유생들의 시험에서도 표의 제목으로 ‘송나라 한림 侍讀 馮元 등이 會慶殿 서북쪽의 궁궐과 이어져 있는 땅에 龍圖閣을 세우고 열성조의 어서, 어제, 문집 및 전적, 보물과 宗正寺에서 올린 屬籍, 세보를 봉안하고 學士, 直學士, 待制, 直閣 등의 관원을 두어 관장할 것을 청하였다’⁴⁾는 내용을 채택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며칠 뒤인 28일에도 열성조의 어제와 어필을 규장각으로 받들고 나아가라고 명하고 이어 열성조의 어제 초본을 안에서 이미 봉안하였고 그 가운데 제본하여 책이 된 것은 마땅히 규장각으로 받들고 나아가야 하고 책의 운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도 제학 이하가 모시고 나갈 채색 수레와 儀仗을 규례대로 준비하고 책자가 너무 많으면 龍亭으로 거행하며 나아가갈 때에 동반과 서반은 반차에서 맞으라⁵⁾는 지시에서 왕 스스로 제도에 대한 여러 측면의 고려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黃景源 등 규장각 제학 이하를 존현각에서 소견하는 자리에서 규장각 절목을 가져오게 하고 이병모가 올린 절목에 대하여 제학 이하가 廳座할 경우 자리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복원은 제학과 직제학은 가운데 자리에 앉고, 직각과 대교는 동쪽과 서쪽에 앉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 홍국영도 규장각의 書吏도 계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조는 서리 1인을 홍문관 冊色書吏로 계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정조 원년 4월 15일에는 존현각에서 閣臣 李秉模와 공조판서 具允鉅를 소견하면서 구체적으로 「奎章閣志」 형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에 그 때까지 謄錄에 대한 절목을 강구하여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장차 고금의 事跡을 모아 규장각의 規制를 정하여 책자를 하나 만들려고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참석한 이병모 등은 왕의 갑작스런 제의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몰라하자 승지 정민시가 왕의 뜻은 志와 같은 체제를 말하는 것이라 하므로 이에 정조도 「弘文館志」, 「春坊志」처럼 하면 좋다⁶⁾고 하였다.

4) 「日省錄」 正祖 卽位(1776, 丙申)年 9月 19(丁亥)日.

5) 「日省錄」 正祖 卽位(1776, 丙申)年 9月 28(丙申)日.

6)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4月 15(庚戌)日.

원년 8월 28일에 왕이 효명전에 나아가 晝茶禮를 행하면서 홍국영에게 奎章閣節目을 읽어보라 명하고 절목에 미진한 데가 있기는 하나 대체는 좋다는 평가를 하였다. 이에 홍국영도 절목이 매우 상세히 갖추어졌다⁷⁾고 하였다.

이때의 점검은 마무리 단계의 정리라 할 수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15일에 誠正閣에서 승지 鄭民始와 관중주부사 徐命膺을 소견하면서 다시 완전한 상태의 奎章閣志⁸⁾ 편찬을 확인하므로 서명웅이 지어내었고 왕이 감히 보시기를 청하여 기사관 徐龍輔에게 명하여 ‘藏書儀’를 읽게 하였다.

이에 서명웅은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표를 붙이시고 글이 완성되거든 책 첫머리의 서문을 친히 지어주기를 청하였으나 정조는 스스로를 낮추어 문체를 익히지 않았고 序文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겸양하고 서명웅에게 지어 바치라고 지시하였다.

덧붙여 「奎章閣志」의 내용중 ‘九帳儀’와 ‘藏書儀’는 매우 좋으나 좋은 법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행할 수 없으니 장차 충분히 읽은 뒤에 도로 내리겠다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⁸⁾ 성정각에서 부제조 홍국영을 소견하면서는 각지 편찬의 미진함을 말하면서 모든 일은 규모를 먼저 세우고 그 節目을 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행할 수 있는데, 규장각으로 말하면 설치한 지 꽤 오래되었으나 규모가 아직 서지 않고 절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두서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홍국영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도 반드시 규모를 먼저 세운 뒤에야 庶務가 이루어지고 百度가 행해질 것이라는 편찬의 재촉에 대한 당위성을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편찬에 대한 중간 점검과 부분적인 수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년 9월 17일⁹⁾에도 誠正閣에서 홍국영을 소견하면서 부분적인 수정에 논의를 계속하였다.

즉 奎章閣志⁹⁾에 아직 점검하여 고칠 부분이 있으나, 당상이 경연을 例兼하고 낭청이 춘추를 예검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같음을 밝혔으며 규장각의 褒貶도

7)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8月 28(辛酉)日.

8)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9月 15(丁丑)日.

9)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9月 17(己卯)日.

예조에 바치는 것으로 節目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의에 홍국영은 규장각이 이미 예조에 딸린 관청이 아니므로 곧바로 승정원에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므로 왕도 이에 동의하였다.

원년 12월 11일¹⁰⁾에 규장각의 경비조달과 제도정비를 위한 부분적인 논의와 더불어 정조는 일관되게 奎章閣志」도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겠으나 中書冊에 직각과 대교를 좋게 배치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명응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살펴보고 付籤, 揭板 등의 일도 해아려서 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한편 「奎章閣志」 편찬의 진전으로 내용의 수정과 보완을 위한 조치에 대한 논의가 원년 12월 16일에 있었다. 규장각 절목을 이제 막 완성해 내려 하는데 합당치 못한 점이 있음을 정조가 지적하므로 김상철은 비록 절목을 완성해 낸 뒤라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원년 12월 16일에 閣誌의 수정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21일¹¹⁾에는 회정당에서 서명응 등을 소견하면서 규장각 절목의 완성을 물으니 中草를 막 내었다고 하였다. 이 때 서명응에게 관직의 업무분장 중 文衡의 例兼을 다시 확인하니 문형을 예겸하게 한다면 주객의 형세가 장차 아주 다르게 될 것이므로 규장각 당상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관하게 하는 것을 결코 그만둘 수 없다는 강한 주장에 부딪히게 되었다.

같은 날인 12월 21일¹²⁾에 내각제학 서명응은 다음과 같은 차자를 올려 규장각의 규정을 나아가 전하였다. 차자의 대략에,

...규장각은 곧 우리 전하께서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처음으로 창설하신 제도입니다. 문치가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음이 없으니, 의당 규모를 바로잡고 절목을 상세하게 정하여 영구히 흔들리지 않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개 외각을 用으로 삼고 내각을 體로 삼으니, 우리나라에서 문형이 三館을 겸한 것도 이 뜻입니다. 지금 교서관과 규장각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규장각 당상으로 교서관 제조를 예겸하게 하며 낭청으로 교서관 교리를 예겸하게 하고, 교서관 아문을 時御所 부근의 관청과 서로 바꾸어서 옮겨 설치하소서. 무릇 외각에서 책을

10)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11(癸卯)日.

11)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21(癸丑)日.

12)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21(癸丑)日.

인쇄하고 간행하는 따위의 일을 모두 내각 당상과 낭 청이 주관하여 거행하게 하면, 거의 교서관과 규장각이 체용을 겸하고 내외 가 하나가 되는 방도가 마련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재결하소서...

이라 하므로 정조는 이미 대신에게 물어서 참작하여 정한 것이 있으니 다만 절목을 완성해 내어 보고하라 하였다.

2.2 제도 정비의 과정

정조는 제도와 더불어 실제의 운용에 소요되는 물력의 동원에 대하여 서명응이 제시한 대책을 세우고자 하여 원년 12월 11일¹³⁾에 규장각에 딸린 下屬들의 料布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홍국영은 좋은 계책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에 왕은 서명응이 규장각에 사용될 비용을 관서의 곡식으로 區劃해 달라고 청하지만 종내 加分한다는 혐의가 있어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변통의 방법을 구하므로 홍국영은 戶料와 兵布로 건의하므로 이에 왕은 호조 관서와 상의하여 한 해 동안에 지급해야 할 경비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을듯하다고 하였다.

정조는 서명응을 소견하고 본각에 보내어 冊帙을 바로 잡게 할 것이라며 그가 규장각이 明堂이나 辟雍과 차이가 없다고 한 말은 실로 고금에 대해 해박한 것으로 다시 본각으로 들어가 규장각의 일을 전담하게 되었으니 모든 미비한 일을 헤아려 제도를 청함으로써 한 각의 규모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언급에서 규장각 제도의 정비에 더욱 열의를 밝혔다.

홍국영은 이러한 정조의 언급에 대하여 이 각을 창건한 것은 文教가 천명되기를 원하였으니, 서명응의 말에 일리가 있으며 그는 전부터 본각의 일을 自任하였으니 반드시 잘할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서명응이 유배에서 돌아와 판중추부사로 규장각의 일을 다시 맡았기 때문에 언급된 것으로 정조는 규장각의 일은 서명응이 살펴서 검사하지

13)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11(癸卯)日.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 미루어져 민망하다는 지적에 서명응도 謫所에서 규장각 일 때문에 늘 염려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 그가 요청한 物力을 변통할 방법에 대해서도 정조는 관서의 곡식을 구획하는 일에도 가분한다는 혐의가 있어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서명응은 保民司도 구획한 사례가 있으니, 이것은 가분과는 차이가 있는듯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여전히 물력을 아직 변통할 방법이 없으니, 下隸의 料布는 戶料와 兵布를 마련하고 閣 중의 땀나무와 기름 등의 일은 또한 궐내 각사의 예에 따라 進排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에 서명응도 규장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굽히지 않고 의견을 펴서 규장각은 전하께서 즉위한 원년의 큰 사업으로 옛 聖王의 靈臺나 辟雍과 다르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 각에 쓰이게 될 것이라면 물력이 소비되는 것을 아끼지 말고 관서의 곡식을 구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강변하였지만 관서미의 일은 조정 관례상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제도 문제에 있어서도 서명응이 규장각은 교서관을 외각으로 삼은 후에라야 體用이 겸비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도승지는 교서관을 分館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서명응은 교서관을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규장각으로 하여금 겸하여 통솔하게 하자는 뜻을 밝히므로 정조는 직각이 교리를 겸임하고 제학이 제조를 겸임하는 것이 좋을듯하다고 중재하였다. 더불어 이 내용을 擧條로 해서는 안 될 듯하므로 서명응으로 하여금 조목별로 구별하여 簡子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서명응은 만약 내각과 외각으로 구분하여 제도로 정하려고 한다면, 교서관은 형세상 장차 궐외의 가까운 곳에 있는 公廨와 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원년 12월 12일¹⁴⁾에는 성정각에서 승지 홍국영을 소견하면서 규장각의 재정조달에 대한 어제의 서명응과 논의를 언급하면서 역시 吏隸의 요포는

14)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12(甲辰)日.

변통할 방법이 없으므로 장차 他司의 예에 따라서 호료와 병포로 마련하려는 계획을 말하고 의견을 구하므로 이미 재력을 달리 區劃할 수 없다면 그 방법이 명분이 바르고 이치에 맞는다고 답하였다.

또 서명응이 제시한 규장각을 내각으로 삼고, 교서관을 외각으로 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았고 이례의 요포를 비록 그렇게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관원의 驅賃은 실로 구획할 방법이 없다고 하므로 재원도 없고 자리가 이미 淸職이므로 驅價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답을 하였다.

같은 달 15일¹⁵⁾에도 교서관을 규장각에 소속시키는 일에 대하여 해가 될런지 여부를 홍국영에게 물으니 관제를 바꾸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그렇다고 쉽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대신들에게 물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 인적인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원년 12월 16일¹⁶⁾에 규장각 당상 중에서 有司堂上을 차출하고, 낭청은 掌務官을 차출하여 春坊의 說書의 예처럼 하자는 정조의 의견에 김상철은 일전에 올린 차자에서 규장각 당상이 교서관 제조를 例兼하고 규장각 낭청이 교서관 교리를 예겸한 뒤에야 안팎이 서로 떠받쳐서 일의 권한이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라 한 의견을 상기시키고 덧붙여 규장각의 당상과 낭청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관하게 한다면 교서관의 모양도 전에 비하여 나아질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조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못한 듯 원년 12월 18일¹⁷⁾에도 성정각에서 대사성 徐浩修 등을 소견하면서 교서관을 규장각에 합하여 설치하면 혹 나아지는 점이 있는지의 여부와 대제학을 例兼하면 일에 불편함이 많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어 서호수로부터 대제학이 어렵게 여길 듯하지만 규장각 제학을 대부분 文衡중에서 선출한다면 그 근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규장각 원역의 料布에 대해서는 호조 판서에게 말하여 즉시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15)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15(丁未)日.

16)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16(戊申)日.

17)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12月 18(庚戌)日.

2.3 내용 수정과 再草本의 성립

『日省錄』 정조 2년 3월 25일¹⁸⁾에는 체제 정비의 차원에서 규장각이 이미 절목이 완성되어 교서관과 합쳐졌으니 교서관의 제조를 규장각 제조에 단부하라고 명하였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제도의 정비와 함께 정조는 성정각에서 홍국영을 소견하는 자리에서도 이어지는 조치로 「奎章閣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장차 첨삭하여 인쇄해내고자 하며 교서관은 이미 규장각과 통합하였으니 마땅히 兼提調를 차출해야 함을 계속 지시하고 있다. 덧붙여 직각과 대교도 직을 겸한다는 것을 본각에서 草記한 뒤에 주도록 하였다.

즉 이러한 일련의 지시는 규장각의 위상과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통합과 업무분장 등에 관한 정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규장각 제학 徐命膺을 소견하면서 규장각에도 故事가 있을 것이므로 待敎로 하여금 일기를 쓰게 하되 당상과 낭청의 입직 및 규장각에서 하사받은 물건 등을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하여 춘방의 일기와 같도록 지시도 있었다.

다음날인 3월 26일¹⁹⁾에도 규장각의 직제학에서 제학으로 승진한 승지 홍국영을 다시 소견하면서 규장각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부탁하고 규장각 제학이 이미 교서관 제조를 겸하고 있으니 閣誌를 서명응과 서로 의논하여 윤색하고 첨삭해서 서둘러 인쇄해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제도의 정비중 반사하는 책에 대한 논의는 2년 5월 12일²⁰⁾에 兩南에서 인출한 『明義錄』과 『續明義錄』을 반사하라고 명하면서 나타난다. 이 때 정조는 동반의 외관에게는 정원의 하리가 가져다 전하며 수령과 변장인 경우는 본도의 감사나 병사에게 모두 봉함을 내려 보내 본도에서 직접 頒給할 수 있게 하지만 閣吏가 가져다 전하는 것은 특별히 내린 하교이므로 이후에는 전례로 원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후에 편찬된 완성본 갑진년 간행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8) 『日省錄』 正祖 2(1778, 戊戌)年 3月 25(乙酉)日.

19) 『日省錄』 正祖 2(1778, 戊戌)年 3月 26(丙戌)日.

20) 『日省錄』 正祖 2(1778, 戊戌)年 5月 12(辛未)日.

정조 3년 3월 6일²¹⁾에는 이문원을 창설한 후 처음으로 행차하여 閣臣을 소견할 때 謝箋을 올리고자 하므로 다음날 규장각에서 반도록 하고 의식을 갖추라 명하였으며 처음 행차에 따른 御製詩를 내리고 화답하는 시를 올리게 하였다.

다음날²²⁾ 규장각에서 讀箋과 사배례 등의 의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의식과 절차는 모두 송나라의 고사를 본떴는데 내각에 이르러서는 열조 이래로 아직 손을 대지 못했으니 이상하다며 내각의 제도가 제대로 갖추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정비와 閣誌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閣誌의 편찬은 순조롭지 못하여 정조 3년 8월 24일²³⁾에도 奎章閣志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여 염려스럽다고 하면서 序文은 대략 초고를 만들었는데 매우 엉성하니 서명용으로 하여금 보도록 하고 미흡한 곳이 있으면 삭제하고 윤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서문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거의 완성을 앞둔 상태로서 9월 6일²⁴⁾에 이르면 정조는 성정각에서 서명을 소견하면서 「奎章閣志」는 매우 상세히 갖추어지고 모두 조리가 있으니 잘 만들었지만 이후로 추가하여 넣을 만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여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서명용은 「奎章閣志」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조3년 11월 21일, 22일 본각에 들고²⁵⁾ 있으며 4년 5월 29일²⁶⁾에는 해당 부서에서 품하는 三大臣을 정할 때 通政에서 嘉善까지의 규정이 각지에 밝혀져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4일²⁷⁾에는 閣誌가 아직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일은 근자의 예에 따라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2.4 내용 수정과 完成本の 성립

21) 「日省錄」 正祖 3(1779, 己亥)年 3月 6(庚寅)日.

22) 「日省錄」 正祖 3(1779, 己亥)年 3月 7(辛卯)日.

23) 「日省錄」 正祖 3(1779, 己亥)年 8月 24(乙亥)日.

24) 「日省錄」 正祖 3(1779, 己亥)年 9月 6(丁亥)日.

25) 「內閣日曆」 正祖 3(1779, 己亥)年 11月 21日, 22日.

26) 「日省錄」 正祖 4(1780, 庚子)年 5月 29(丁未)日.

27) 「內閣日曆」 正祖 4(1780)年 8月 24日.

정조 5년 2월 13일²⁸⁾에는 本閣應行節目을 수정하는 일을 논의할 때 閣이 창설된 지 오래되었으나 규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각신들 사이의 예절과 格例를 규정한 內閣故事節目의 내용을 정하여 기록할 만한 것을 閣誌에 수록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14일²⁹⁾에는 政院에 부쳐진 本閣節目에 대한 草記件의 대하여 시임, 원임과 당시의 각신들이 본각에 모여 다시 검토를 하였다. 이때 이루어진 절목은 모두 31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같은 달 29일³⁰⁾에는 서호수가 성정각에서 晝講의 자리 중 규장각의 기능에 대하여 말하기를 「奎章閣志」가 이미 편찬되어 장차 인쇄·반포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 처음부터 내용을 다듬는데 참여한 사람으로서 내각의 기능이 ‘備顧問掌詞命之地’로 경연과 관각을 겸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하였다.

이러한 수정과 보완의 우여곡절을 거듭한 뒤 「奎章閣志」는 정조 7년 2월 2일³¹⁾에 서명웅이 책을 들이는 일로 입궐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교정이 있어 같은 해 8월 3일³²⁾ 김교직각 徐鼎修, 徐龍輔가 왕명으로 입시하여 閣誌를 수정하는 일로 두 제학과 승지 林錫喆, 사관 徐滢修, 金鳳顯, 尹行任 등이 빨리 들어올 것을 지시하였다. 8월 5일³³⁾에도 개성유수 徐有防이 閣誌 수정의 일로 속히 올라올 것을 명령받았으나 현지에서의 科場設置로 약간 늦어짐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각지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들이 수시로 참여하곤 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수정을 거친 「奎章閣志」의 최종적인 인쇄는 정조 7년 12월 1일³⁴⁾ 춘당대에서 초계문신의 시험을 치를 때 直提學 鄭志儉을 비롯한 각신들이 閣誌가 곧 완성되어 인쇄하려고 하므로 元子宮의 冊禮 후에 봉안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각지의 인쇄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듬해인 정조 8년

28) 「內閣日曆」 正祖 5(1781)年 5月 13日.

29) 「內閣日曆」 正祖 5(1781)年 5月 14日.

30) 「內閣日曆」 正祖 5(1781)年 5月 29日.

31) 「內閣日曆」 正祖 7(1783)年 2月 2日.

32) 「內閣日曆」 正祖 7(1783)年 8月 3日.

33) 「內閣日曆」 正祖 7(1783)年 8月 5日.

34) 「內閣日曆」 正祖 7(1783)年 12月 1日.

2월 2일³⁵⁾에 金喜에게 지시하기를 閣誌는 草가 나온지 오래되었으나 아직 간행치 못하고 근자에 왕이 직접 수정하고 의심나는 곳에 일일이 첨을 붙이므로 수일 내 간행은 불가불 늦추고 여러 신하들이 자세히 살펴본 후 의견을 적어 나중에 말해주기를 바라며 발문은 시임, 원임각신중에서 속히 지어 올리도록 하고 각리로 하여금 제학 중, 한 사람이 있는 楊洲牧使處로 연락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閣誌의 어제 서문은 그 해 3월 29일에 만들어져 內閣日曆에 전제되어 있으나 최종의 간행본에서는 ‘仲夏’ 즉 5월로 늦추어져 있다.

갑진년 5월 4일³⁶⁾에는 監印閣臣으로는 原任直閣이 낙점되었으며 6일³⁷⁾에는 왕이 閣誌의 범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서호수는 建置와 制度를 마땅히 앞에 두는 까닭에 조금 고쳤으나 아직 규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왕은 「太學志」, 「弘文館志」와 같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윤행임은 志의 체계는 山經水誌와 달리 먼저 堂宇가 있는 위치와 칸수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다. 왕은 인쇄가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고치게 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하고 신하들은 지나치게 검토하다 책의 완성에 시일이 촉박하여 졸속하게 만들어질까를 걱정하였다. 왕은 서호수에게 일찍 퇴근하여 이 초안을 奉朝賀인 서명웅과 더불어 初篇凡例를 만들어 내일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신중함을 거듭 보이고 있다.

막바지에 이른 수정 작업에는 앞의 논의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檢書官 李德懋가 閣誌修正所로 5월 7일, 9일, 11일, 13일, 14일, 17일의 6일이나 나아가 작업하였다.³⁸⁾

이렇게 하여 閣誌는 6월 1일부터 인쇄하기 시작하여 11일에는 다음날 거행할 閣誌의 進書儀에 대하여 논의하여 讀序文官으로 尹行任을 결정하고 이때 「弘文館志」도 함께 진서의를 가지게 되었다. 12일에는 관련자들을 포상하고 頒賜件에 대하여 奎章之寶 찍을 것을 청하였다.³⁹⁾

35) 「內閣日曆」 正祖 8(1784)年 2月 2日.

36) 「內閣日曆」 正祖 8(1784)年 5月 4日.

37) 「內閣日曆」 正祖 8(1784)年 5月 6日.

38) 「內閣日曆」 正祖 8(1784)年 5月 7日, 9日, 11日, 13日, 14日, 17日.

39) 「內閣日曆」 正祖 8(1784)年 6月 1日, 11日, 12日.

3. 純祖代의 書籍保管制度

순조 이후의 역대 왕들은 정조가 만든 규장각 제도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內閣日曆」이나 그 밖의 사료에 의하면 서책의 수입이나, 출판을 비롯한 학술 장려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는 가운데도 서책의 관리나 저술과 간행이 명맥을 이으면서 순조 3년 4월 29일⁴⁰⁾에는 본각에서 石經을 내어 帖으로 만들어 보관시켰다는 기록이 눈길을 끈다. 탁본으로 13經과 그 밖의 碑文을 책으로 만들어 수장시켰다는 것은 앞서 정조 14년 12월 3일⁴¹⁾에 13經에 대한 전체의 개념과 차이에 대한 ‘十三經策題書’를 왕이 초계문신에게 내리면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당시 학자들의 관심과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책은 모두 192책으로 44갑에 넣어 內入하였다.

周易	10책	禮記	24책	孟子	14책
尙書	8책	春秋左氏傳	48책	孝經	1책
毛詩	13책	春秋公羊傳	15책	爾雅	3책
周禮	15책	春秋穀梁傳	14책	五經文字	7책
儀禮	15책	論語	5책		

그밖에 다음과 같은 도판과 비석의 탁본 13책도 본각에 藏置하고 석경을 첨으로 만든 기술자들을 포상하였다.

儀像圖	3책	孔宙碑	1책
戰圖	3책	漢乙瑛碑	1책
禮記碑	1책	建寧元年碑	1책
漢熹平碑	1책	孔彪碑	1책

40) 「內閣日曆」 純祖 3(1803)年 4月 29日.

41) 「內閣日曆」 正祖 14(1790)年 12月 3日.

이와 같은 장서의 편입이나 외규장각의 점검, 어제의 봉안 등 일상적인 규장각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순조 5년에는 왕의 장서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순조 5(1805)년 4월 27일과 28일⁴²⁾에 걸쳐 순조는 궁중의 장서처에 대하여 박종훈과 여러 면에서 토론을 하였다. 이날 提學 2, 直提學 2은 임명되지 않았고 檢校提學 金祖淳, 檢校直提學 徐榮輔, 朴宗慶, 直閣 洪奭周는 병은 출근하지 않았다. 檢校直閣 沈象奎와 金邁淳은 任所에 있고, 檢書官, 兼檢書官 등도 대부분 바깥에 있거나 휴가중인 때 待敎 朴宗薰만이 입직하여 誠正閣에서 순조와 召對를 하면서 주고받은 대화중에서 궁중의 서적관리제도 대한 여러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3.1 西庫 冊子の 管理

왕이 西庫에 소장되어 있는 經書의 수량에 대한 질문에 박종훈이 서고에는 경서가 약 30건에 이르고 본각에도 따로 별치하고 있는 頒賜한 책들이 있다고 답하였다.

왕이 이르시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온 서책은 목록 중에 하나 하나 첨을 붙여 추가하고 들어온 책 중 한 건은 각 중에 보관시키고, 매번 들어올 때 돌려보고 수정하여 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번에 내려준 책자 중에 목록에 실지 않은 것 또한 침록하여야 할 것을 지시하였다.

3.2 書籍의 曝曬

內府書籍의 포쇄 방법에 대한 순조의 물음에 대하여 권질이 대단히 많아서 한번에 모두 말리기는 어려우며 대체로 3·4월에 시작하여 6·7월에 마친다고 답하고 있다.

42) 『內閣日曆』純祖 5(1805)年 4月 27日, 28日.

구체적으로 文獻閣은 언제쯤 포쇄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매년 한 차례 혹은,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하는데 근년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난 봄에 비로소 한번 하였다고 밝혔다.

또 문헌각과 관련하여 그 위치에 대하여 경희궁의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종훈은 작년에 포쇄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하며 듣건데 差備 근처에 있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당시의 규장각의 실무자라 할지라도 궁중전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박종훈의 인식이 개인적인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인 현상, 즉 정조때의 여러 각신들이 규장각과 중국의 역대 장서관련 기록 및 당시 궁중의 여러 장서처에 대하여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인가는 알 수 없다.

3.3 藏書處와 藏書 機能

3.3.1 閣古觀

순조와 박종훈은 서로 규장각의 각 장서처와 기능을 정확하게 몰랐던 관계로 열고관이 개유와 상층인가라는 질문에 박종훈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나 「奎章閣志」나 「東闕圖」 등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두 건물은 상하층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이 나란히 붙은 상태로 열고관은 2층, 개유와는 단층의 건물이었다. 「奎章閣志」의 초초본에 의하면 열고관은 3칸이며 위는 樓, 아래는 閣이라 하였다.

또 순조는 閣古觀의 鐵籠의 창 아래 「宋史筌」이 있다는데 지난 날 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각신은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종훈이 대답하기를 그때 저는 직을 맡지 않았으므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열고관은 단지 중국관 책이 있을 뿐이고, 「宋史筌」 한 건은 西庫에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은 정조의 동궁시절부터 신하들과 함께 저술활동을 한 많은 책들중의

하나로 150권의 거질이며 중국 정사의 『宋史』가 부실하고 오류가 많은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저술된 것이다.

비록 이때의 상황은 아니지만 규장각이 처음 세워져 제도를 정비할 때 기준이 되었던 閣誌의 초초본에는 주합루의 책을 북쪽 벽 하층에는 4-6개의 서가를 남향으로 두고 경·사부류에 해당 되는 책을 수장하였으며, 왼쪽에는 경부, 오른쪽에는 사부를 두었다고 하였다.

동쪽 벽 아래에는 북쪽 벽의 경우와 같이 서가를 서향으로 열을 세우고 사부류에 해당되는 책을 두었다. 서쪽 벽 아래에는 동쪽과 같이 서가를 동향으로 열을 세우고 집부류를 수장하였다. 또 서가사이에는 版으로 간격을 벌려 놓고 다리를 높게 하여 비바람에 젖지 않고 벌레나 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봉모당의 책은 璿譜는 甲庫, 王妃世譜는 乙庫, 御製는 丙庫, 御筆은 丁庫로 하고 서가의 이름을 서가에 걸고 벽충향 주머니 4개를 매 서가의 상하좌우에 걸었다.

관리에 있어서는 直閣과 司卷, 領籤 각1인이 甲·乙庫를 담당하였으며 待敎와 司卷2인, 領籤2인이 丙·丁庫를 담당하였다. 提學과 直提學은 그 일을 총괄하였다. 또 書籤은 唐宋 秘府의 방법이고 상아뼈에 書名을 새겨 붉은 색을 넣어 사용한다. 曲尺의 끝과 모양을 각 책의 帙 사이에 꽂는 것은 모두 찾기 편하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이 방법이 그리 간편한 방법은 아니었고 과거 중국에서 油素나 油黃을 쓴 것에 대응하여 지금은 색지나 후지를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규장각의 다른 장서처에도 준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3.2 鑄字所

주자소의 서책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박종훈이 十字閣庫 안에 두고 이 모두 새로 찍은 책자이므로 새로 찍은 후에 봉합해서 소장했기 때문에 포쇄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혹 비가 새는 곳은 손상이 많아 신하들은 항상 걱정하고 있으나 그것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답에 대하여 왕이 西庫와 宜春門庫 중 어디에 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두 곳으로 나누어 옮겨 수장하는 것이 주자소에 소장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주자소가 너무 좁다고 하므로 순조는 주자소의 책자는 모두 몇 권이나 되는지 목록을 살펴보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박종훈이 보고하기를 「四部手圈」 100여권이 있는데 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3.3.3 摛文院

왕이 이문원의 책을 어느 곳에 소장하는가라는 질문에 東二樓와 行閣庫에 나누어 둔다고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동이루의 木櫥에 어떤 것을 두는가라는 질문에 經書 및 御定の 여러 책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3.3.4 書籍의 閱覽

장서수와 장서처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과 함께 순조는 그 서적들의 이용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왕은 內府書籍을 혹 閣臣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 西庫의 책은 때때로 가져가 보고 閱古觀의 책은 대출하는 패(請出牌)가 있어서 대출하고자 청한 후에 볼 수 있으며 가져가 보는 것은 그리 번거롭지는 않다고 하였다.

3.3.5 書籍의 保管과 移管・管理

왕이 동이루와 행각고의 서책의 보관 상태에 대하여 물으면서 질이 부족한 것과 벌레 먹어 상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 질이 빠지거나 벌레 먹은 것은 별로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답에 대하여 순조는 목록 중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박종훈은 雜冊에 따로 기록한 것이 있다고 답하였다.

순조는 책의 손상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서책의 이동에 대하여 玉堂 出學條에 따로 보관한 경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각에서 따로 옮긴 것이 있는가 하므로 계축년에 새로 찍은 후에 七書 8건을 玉堂에 따로 두었고, 그때에 각신이 명을 받들어 봉함을 감독한 즉 본각에 두고 출납시에는 각신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왕은 내각의 서적은 출납시 뒤섞이기 쉬우니 지금 내려 주는 책은 命入牌로 들이는 책과 패가 함께 갖추어지도록 지시하였다.

3.3.6 內府書籍의 目錄

이날 순조는 창덕궁에 있으면서 誠正閣에 나아가 박종훈과 召對를 하면서 규장각과 서적 수장처의 관리와 목록 등의 정비에 대하여 문답하였다.

왕이 이전에 내려준 책의 서목이 이미 수정되었는지를 점검하므로 박종훈이 말하기를 매 년 들어오는 책자는 하나하나 標識를 살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리를 마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끝낼 때까지는 수 일이 걸린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앞서 내린 목록 두 건 중 新件은 모두 근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곳이 없지만 舊件은 서로 차이 나는 부분이 많아 부득이 수정을 가하여 정리한 후에 절차대로 들여야 하고 이미 내려주신 책자는 감히 마음대로 刪正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순조는 그런 상황이면 新件 目錄에 의지하여 고치고 두 목록을 서로 맞게 한 후에 고쳐서 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하였다.

박종훈은 권질이 부족한 것과 벌레 먹어 상한 자료들에 대하여 어제 순조가 물으실 때는 자세히 보고하지 못하였지만 두 종류의 책들은 舊件目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守直間의 樓上庫 안에 있다고 하였다. 또 그 전에 이미 구분하여 처리하고 신목록에는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두 쪽에 각기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에 대하여 왕이 이들을 곧 모아서 안으로 들이라 하므로 도승지 徐滢修가 서목의 일은 그 기술 내용을 정확히 한 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하며 그의 先朝가 왕명을 받들어 「奎章總目」을 편찬할 때의 예를 들었다.

즉 내부서적은 찬한 사람의 이름과 성, 찬집을 하게 된 내력이나 경과를 함께 실었고 혹은 시대 사람의 논의를 모아 한 책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모두 崇文總目, 「集賢書目」의 류와 馬端臨의 「文獻通考」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중국 목록의 전통은 劉歆의 「七略」에서 시작하여 역대의 역사서에는 모두 예문지를 갖추게 되었으며 서적을 수집한 곳에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을 주청하였다.

또 「奎章總目」을 편찬한 후 새롭게 구비된 책이 많으므로 待教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보태고 바르게 하여 계속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정조가 중시하고 관심을 두었던 중국에서 구해 온 「四庫全書」에도 별도의 목록이 있는가라는 순조의 질문에 박종훈은 「簡明目錄」이 목록과 같은 뜻이라 하였다.

또 「奎章總目」은 이러한 목록들 중의 하나로서 내부의 서적을 모은 것이며 지난번에 내려주신 목록은 서명별 수량이나 기록들을 수록하고 있어서 둘 다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

왕이 「奎章總目」을 내리시며 말씀하시므로 박종훈은 이 목록중에서 아직 수록되지 않은 것은 살펴서 수록여부를 정하고 더 보태고 고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장각의 소장서적에 대한 목록에 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규장각의 목록에는 신·구의 두 종류가 있으며 두 목록은 그 수록된 내용이 달랐다.

② 신건목록이 정확하며 부족한 권질이나 벌레 먹은 책에 대한 것은 구건에 수록되어 있었다.

③ 목록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규장총목을 기준으로 재조하고 수록내용은 중국과 역대의 서목에 의거하여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

④ 여기서의 신, 구건의 두 목록은 현존하는 「奎章總目」의 표지명이 있는 4권 3책의 계유와서목 이 구건에 해당되고 장서각에 소장된 「閣古館書目」이 신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열고관 서목의 권말에는 「皆有窩北方書目」과 「文獻閣書目」, 「演慶堂書目」이 합쳐되어 있다.

이 목록과 관련된 연구로 필자는 1984년 「도서관학」 11집에서 문헌각과 문헌각서목⁴³⁾을 다루면서 內入된 날짜가 붙은 책과 기록에 의하여 서목의 편성년대를 1829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소장된 자료가 大內로 이동한 기록을 문헌각에 소장된 기록으로 잘못 인식하였으므로 별도의 수정원고를 준비 중이며 여기서는 순조 5년의 기록에 의거하여 그 이전에 작성된 목록으로 바로 잡고 따라서 이 때 내려준 서목이 「閣古館書目」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4. 藏書處 記錄의 分析

정조는 등극 초부터 서책의 수집과 관리, 이용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으나 일부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못마땅한 심기를 간혹 드러내기도 하였다.

정조 2년 12월 23일⁴⁴⁾에 홍문관에서 召對에 사용할 책자를 近思錄으로 결정하므로 本館과 시강원에서 올린 전질이 모두 4건으로 어람에 부족하므로 교서관으로 하여금 印行해 올리도록 해달라고 청하는 草記를 시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그 때 정조는 「近思錄」은 일찍이 세자로 있을 때에 進講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한 건수가 이번 소대에 쓰는 것보다 적지 않았고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 사이에 몇 년 지나지도 않아 지금 수요를 채울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행하기를 청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정조는 평소 內庫의 서적을 잘 관리하라는 뜻으로 직교하였는데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한 질이 되지

43) 남권희, “文獻閣과 文獻閣書目的 分析,” 「도서관학」 11집(1984).

44) 「日省錄」 正祖 2(1778, 戊戌)年 12月 23(己卯)日.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매우 온당치 않다고 하면서 이듬해 3년 1월 18일⁴⁵⁾에는 召對의 책자인 近思錄은 규장각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 쓰라고 명하고 그의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홍문관에서 소대의 명에 따라 시강원의 책 장부를 다시 조사해보니 본관에서 올린, 「近思錄」3건 중 1건은 落帙되어 쓸 수가 없고, 시강원에서 올린 5건 중 3건은 규장각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곳에서 올린 것이 도합 4건인데, 御覽할 案冊을 합치면 필요한 것이 8건이라는 보고를 하므로 별도의 시강원 관리용 책목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책의 정리 부실 외에도 보관에 있어서 정조 3년 9월 15일⁴⁶⁾에 의하면 본각의 서적 포쇄가 여름을 넘겼더라도 이미 장마를 겪은 데다가 어제를 봉안한 뒤 한 번도 포쇄하지 않았으니 염려되므로 본각에서 가까운 시일로 날짜를 잡아 거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에서도 제대로 규칙과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궁중의 여러 장서처와 관련 기록들은 奎章閣志의 완성 후 이의 적용이 엄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다음 몇 기록을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 ① 봉모당과 규장각의 여러 장서처의 奉審과 展拜를 閣誌에 의거하여 거행
- ② 여러 장서처의 점검과 曝曬를 閣誌에 의거하여 거행
- ③ 정조 10년 2월 5일⁴⁷⁾에는 사권과 각감을 처음 임명할 때에 奎章閣志에는 취재하는 정식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낙점을 받도록 함
- ④ 入診하는 자리에 따라서 들어오는 것은 「奎章閣志」에 실려 있음에도 늦게 입시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정조 10년 3월 5일⁴⁸⁾에 도승지를 문책
- ⑤ 奎章閣志「差除條」에 제학은 문형 및 홍문관 제학, 예문관 제학으로 通望된 사람을 長望으로 낙점을 받으므로 銓官 및 應避에 해당자와 외임자를 포함하라고 되어있으나 정조 10년 7월 20일⁴⁹⁾의 인원 추천에서 이조 당상이 閣規를

45) 「日省錄」 正祖 3(1779, 己亥)年 1月 18(癸卯)日.

46) 「日省錄」 正祖 3(1779, 己亥)年 9月 15(丙申)日.

47) 「日省錄」 正祖 10(1786, 丙午)年 2月 5(己卯)日.

48) 「日省錄」 正祖 10(1786, 丙午)年 3月 5(己酉)日.

어겼으므로 추고하라 함

4.1 皆有窩

개유와의 서적은 정조 초기부터 점검과 관리가 소홀하여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으므로 정조 2년 2월 28일⁵⁰⁾에 성정각에서 승지 홍국영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책의 정리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정조가 이르기를 개유와에 소장된 서적은 오랫동안 참고하고 열람하지 않아 찌가 어지럽게 붙어 있고, 책의 질이 맞지 않으니, 한번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마침 조용하고 날씨 또한 화창하니, 경과 더불어 가서 본 뒤에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므로 홍국영이 모시고 가서 정조가 직접 개유와의 대청에 나아가 내시들에게 책을 정돈하도록 하고 注書와 翰林은 이 책들의 장부를 가지고 秩에 맞추어 대조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 때 홍국영이 아뢰기를,

“책이 많으면 견문은 반드시 넓어집니다. 비록 시골의 서생이라도 오히려 그 러한데, 더구나 萬機를 다스리고 萬事에 응대하는 제왕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일상생활의 일은 모두 옛날 聖王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니, 만약 고금을 널리 섭렵하고 참고하여 알맞게 헤아려 변통하지 않는다면, 政事에는 소홀히 하는 근심이 있게 되고 일처리에는 자의로 하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진하의 학문은 본디 탁월하셔서 털끝만큼도 더할 필요 없이, 두루 잘 해내시기에 비록 충분하지 만, 외기만 하는 학문은 직접 보고 마음으로 궁구하는 것만 못합니다. 성현의 학문하시는 차례와 제왕이 행한 政令의 득실이 모두 이 책 속에 있으니, 다스리 시는 여가에 때때로 열람하시어, 심오한 이치를 깊이 궁구하신다면, 聖學은 날로 진보하고 治道는 더욱 밝아질 것이니,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책을 많이 쌓아 두기만 하고 독서하는 데에 소홀하다면, 程子가 이른바 ‘서점일 뿐이라는 가르침(書肆之訓)’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더욱더 힘쓰소서.”

라 하므로 왕은 지극히 옳으며 마땅히 자신을 수양하는데 뜻을 두겠다고 하였다.

49) 『日省錄』 正祖 10(1786, 丙午)年 7月 20(辛酉)日.

50) 『日省錄』 正祖 2(1778, 戊戌)年 2月 28(己未)日.

정조 5(1781)년 3월 29일⁵¹⁾에 정민시가 올린 글에 개유와의 소장 책자가 이미 산란되어 체계가 없어졌으며 또 중복이 많아서 한번 점검하고 각 한 질을 분류하여 저장하게 하고 그 중 중첩된 것은 초출하여 서고나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또 개유와가 산등성이의 아래에 위치하여 후면에 음습한 기운이 쉽게 침투하여 서책이 상하기 쉽고 칸수가 심히 좁아서 책을 수장하기 어려우므로 宜春門을 山尾 위로 옮기고 그 터에 긴 회랑을 10칸 지어 책을 소장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서 방향을 여유있게 하여 해를 향하게 하면 음습한 기운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청에 대하여 정조는 비록 좋은 방법이지만 토목공사는 매우 힘들다고 피력하였다.

규장각 초기의 규모는 2칸이며 방 1칸이 軒으로 되어 있다는 기록이 「奎章閣志」 초초본에 수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개유와의 확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해 열고관은 정조 원년 9월 4일⁵²⁾에 홍국영을 소견하는 자리에서 閣古觀의 상량문을 지은 사람이 좌부승지임을 정민시에게 확인하였으므로 이 직전에 완성되었던 건물이라 추정된다. 이 상량문의 전문은 閣誌의 초초본 제14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지은 정민시의 관직이 좌승지라 표기된 점이 다르다.

아무튼 따라서 장서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기록들은 대부분 개유와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서책의 보관상태는 관리를 위한 대규모의 조치들이 있었으니 정조 5년 5월 4일⁵³⁾에는 선왕의 장서 3천권을 포쇄하고 藥院에서 새로 辟蠹香을 공급하여 비치하는 것 외에 순조 3년 윤2월 1일⁵⁴⁾에도 朴宗慶이 입시할 때에 皆有窩의 책을 포쇄하는 5일의 일차식에 검교직각과 대교 등이 함께 그일 담당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 차례 점검과 포쇄를 한 기록이 많다.

51) 「內閣日曆」 正祖 5(1781)年 3月 29日.

52) 「日省錄」 正祖 1(1777, 丁酉)年 9月 4(丙寅)日.

53) 「內閣日曆」 正祖 5(1781)年 5月 4日.

54) 「內閣日曆」 純祖 3(1803)年 윤2月 1日.

한편 이러한 각관에 대한 규칙적인 봉심은 규장각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봉모당이 5일, 15일, 25일에 주로 행해지고 비나 그밖의 천재지변과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봉심이 이루어졌다.

4.2 宜春門庫

의춘문고는 정조대에 계속적으로 의춘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명칭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순조 5년의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춘문의 단어 그대로 궁궐을 출입하는 출궁과 환궁 때의 통과문의 기능으로 주로 봉모당에 책을 봉안할 때 통과하는 문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미 앞서 언급한 개유와 장서의 이동을 위하여 의춘문의 이권이 논의되었던 기록을 보아서도 의춘문이 있었던 지역은 장서처로서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 23(1799)년 10월 4일⁵⁵⁾에 沈象奎, 金近淳, 李存秀이 西庫의 책을 의춘문과 붙은 건물로 옮기기 위하여 서고로 나아갔다는 기록에 의하여 이 때 한 차례 장서가 이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심상규와 김근순, 이준수의 세 사람은 정조 24(1800)년 4월 26일⁵⁶⁾에 서고에 봉안되어 있던 새로 찍은 御定冊子를 의춘문내의 兩庫에 옮길 때도 참여하였다.

의춘문고는 개유와나 서고, 봉모당 등 궐내의 다른 장서처가 그 수장량이 포화 상태가 됨에 따라 점차 여러 곳의 장서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중 순조 5년 11월 27일⁵⁷⁾에는 봉모당에 봉안할 誌狀 등의 책자가 내각으로부터 머지않아 오게될 것이므로 받아들이는 장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朴宗慶 등이 물었을 때 왕이 의춘문내에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동왕 17(1817)년 6월 15일⁵⁸⁾에는 鄭元容이 御製 중 丁卯年에 내입한 것을 포함한 베낀 책들에 대한

55) 『內閣日曆』 正祖 23(1799)年 10月 4日.

56) 『內閣日曆』 正祖 24(1800)年 4月 26日.

57) 『內閣日曆』 純祖 5(1805)年 11月 27日.

58) 『內閣日曆』 純祖 17(1817)年 6月 15日.

논의에서 정묘(1807)년에 베낀 正書 1건과 초본은 아직 내입하지 않았으므로 本閣에서는 볼 수 없으며 정묘 이후의 어제는 류별로 편찬하여 舊本에 이어 베껴 두고, 앞서 들인 草本은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에 대하여 왕은 그리 시행하라 하였다. 이때 같이 올린 내용 중 의춘문고에 수장되어 있는 새로 찍은 여러 책들은 본각에 있을 때부터 자주 포쇄하던 것이나 지난 번 열었을 때 이후 본각은 관리의 책임이 없었던 까닭에 덩고 습한시기를 지낼 때마다 걱정을 많이 듣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열쇄를 본각에 두고 이전의 선례에 의거하여 관리로 하여금 포쇄를 하도록 규정을 정해달라는 주청에 의하여 관리권이 규장각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관리의 책임이 이관된 후인 순조 19(1819)년 8월 4일⁵⁹⁾에는 의춘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古文眞寶」를 포쇄하고 살펴보니 여러 질이 모두 오랜 세월에 파손되고 완전한 것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새로 찍어서 外史庫와 각급 관청에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徐憲淳의 건의에 왕이 따랐다.

같은 달 23일에도 서희순은 동궐의 內庫書籍은 일전에 포쇄를 하였고 서고와 의춘문고 소장의 책자는 벌레먹고, 파손되고, 부식되어 상한 것이 매우 많고 또 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새 책과 섞여 있어서 같이 두면 다른 책도 벌레가 먹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욱 심한 것을 원목록에서 뽑아서 제거시키고 손상된 책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두기를 청하는 것은 이것이 내고서적과 관계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로 보아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었던 규장각이 소장된 책의 관리에 대한 권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년 전의 논의에도 완전한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헌종 2(1836)년 9월 8일⁶⁰⁾의 召對에서도 金洙根이 다시 서책의 관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서고와 의춘문고에 보관된 책들은 비에 젖고 부식되고 파손된 것이 매우 많아서 형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목록 중에서 注를 달고 標式을

59) 「內閣日曆」 純祖 19(1819)年 8月 4日.

60) 「內閣日曆」 憲宗 2(1836)年 9月 8日.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왕도 그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미 순조 19년의 논의와 완전히 같은 문제가 언급되는 점은 약 15년 전에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리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유지되지 않아서 다시 정리의 필요성 느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3 摛文院의 東二樓

이문원은 규장각의 사무를 보던 곳으로 御眞, 御製, 璿源譜牒과 內府書籍을 보관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內閣學士의 집무소 및 규장각의 사무도 맡았던 기관으로 소장하던 서책에 대한 목록도 현존하고 있다.

吳載純이 지은 그 상량문에 의하면 안으로는 天章, 龍圖와 같은 秘書의 閣을, 밖으로는 石渠와 白虎와 같은 圖書의 府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이러한 서적의 수장 기능 외에 정조 9년 9월 12일⁶¹⁾ 등에서와 같이 왕은 가끔 신하들과 행차하여 시문을 짓기도 하던 곳이다.

같은 해 10월 20일⁶²⁾에는 전날 정리하던 어필의 木刻과 石刻의 수가 자세하지 못하고 봉모당의 책이 정리되지 못하였으므로 봉모당, 이문원 누상, 서고 등으로 나누고 형지안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뒤섞이고 흩어지지 않도록 두 제학과 검교직각이 함께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곤수가 어필을 고출할 때 봉모당 장내의 첩본들을 살펴보니 벌레먹고 상한 것이 많으므로 예전대로 포쇄를 거치더라도 장내에 보관하면 다른 책까지 손상시킬 우려가 크므로 조사한 후 점검하여 이문원의 동이루로 옮기고 포쇄한 후 가장 층해가 많은 책은 모아서 개장한 후 궤에 넣어 봉안하기를 청하므로 왕은 좋도록 하라고 하였다.

며칠 후인 10월 26일⁶³⁾의 초계문신과의 課講중에서 정청성을 보고 이르기를 先朝의 御製 5천여 권을 이제 막 이문원의 동이루에 옮겼으니 신하들에게 羹牆錄의 속편을 편찬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나누어 보라는 지시에서 봉모당에서

61) 「內閣日曆」 正祖 9(1785)年 9月 12日.

62) 「內閣日曆」 正祖 9(1785)年 10月 20日.

63) 「內閣日曆」 正祖 9(1785)年 10月 26日.

옮겨온 것이 5천책이나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조 13년 4월 16일⁶⁴⁾의 課講에서 大學』50편과 한 수를 지어 올리도록 한 규정을 초계문신인 심상규와 유한우가 열심히 익히지 않고 또 별성기에 충실하지 않으므로 벌로서 내각의 동이루에서 「大學』을 5백편 읽은 후에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문원의 동이루에 책을 수장한 기록으로는 정조 15년에 「釋王寺碑文作帖」, 정조 23년 에 「羣書標記」, 정조 24년 「御製萬川明月主人翁序」와 懸板 4조를 수장한 기록이 있고 또 순조 3년에도 「元陵碑」의 전면족자 7부와 「永祐園碑」의 전면족자 3부, 음기 3부를 수장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기록과 일치하는 자료들이 현존하는 「摛文院書目」에도 「釋王寺碑文簇子前面」, 「元陵碑簇子陰記」와 「元陵碑簇子前面」, 「永祐園碑簇子陰記」와 「永祐園碑簇子前面」이라는 명칭으로 수록되어 있다.

철종 즉위(1848)년 9월 10일⁶⁵⁾에는 金學性이 內下書籍 중에서 「璿源譜略」 20권, 「正宗御製」 1건, 「純宗御製」 8건, 「翼宗御製」 2건, 「列聖御製」 12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이므로 달리 모셔둘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므로 동이루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글을 올리므로 왕이 허락하였다.

동이루의 규모는 7칸으로 이에 대하여서는 정조 초부터 자주 논의되었던 비좁은 봉모당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종 8(1857)년 3월 20일⁶⁶⁾에 奉謨堂과 西北行閣 16칸이 건립되었다. 옛날의 봉모당은 澄光樓의 뒤 산기슭이었으나 특별히 명하여 고친 것이며, 본래 규장각에는 大酉齋 12칸, 東二樓 7칸, 東行閣 8칸이 있었으나 함께 철거하고 대유재의 옛기둥과 섬돌은 개건할 때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 그 규모와 함께 이 때 철거되고 장서는 새로운 건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천혜봉은 봉모당이 철종 8년 2월경에 광활한 이문원의 대유재 위치로 이진된 이후 장서가 크게 늘었으며 이 때 장서각 소장의 東闕圖形」와 「宮闕志」에 의거하여 대유재는 이문원의 북쪽이며 동이루는 대유재의 동

64) 「內閣日曆」 正祖 13(1789)年 4月 16日.

65) 「內閣日曆」 哲宗 卽位(1848)年 9月 10日.

66) 「內閣日曆」 哲宗 8(1857)年 3月 20日.

쪽에 연결되어 있고 1785년에 세워 서적을 보관하던 곳이라 하였다.

4.4 摛文院

이문원의 기능과 장서, 소장목록에 대하여서는 선행의 여러 연구에서 논의가 자주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조 5년 3월 25일⁶⁷⁾에 沁都에서 내고의 책자판본을 점검할 때 내각서목과 본고서목을 서로 대조하면서 내각서목에 없는 판을 골라 109종 1543책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문원으로 보내고자 하였다. 이어 옮겨진 책은 보존의 형편에 따라 장황을 다시 하거나 책갑에 넣어 정리하였다. 또 같은 해 6월 29일에는 沁都에서 內庫書籍의 東本중에서 초출한 39종 637책을 8척의 배로 나누어 운송시켰다.

정조 6년 12월 28일⁶⁸⁾에는 평양감사인 徐浩修가 장계를 올려 내각주자 즉 재주한구자를 8월 20일에 주조를 시작할 때 따로 신하를 정하고 군관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이때 安福臣의 監董으로 12월 20일에 이르러 83,660자가 만들어졌다. 활자를 보관할 궤를 8개를 만들고, 첩로 만든 井間을 10판과 字藪 1권을 함께 준비하여 안복신이 있는 곳에서 이문원으로 직접 보내도록 하고 안복신에게 상을 내려 줄 것을 청하였다. 이 활자는 정조 18년에 창경궁의 옛 홍문관 자리로 옮긴 주자소에 두고 사용되다가 철종 8(1857)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 때 소실된 활자는 다음해 1월 20일⁶⁹⁾에 우의정 趙斗淳이 주자소의 활자가 타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자신과 원임의 대신들이 재력과 경비를 모으고 계획하여 주관하고자 한다는 글에 왕이 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음날인 21일에 비변사에서 초기로 어제의 鑄字經紀事로 재가를 얻은 규장각검교제학 金炳冀, 제학 尹定鉉, 金炳國을 같이 주관당상으로 하여 물자, 계획, 役所, 시작일자를 논의하여 올리라 하였다. 이에 2월 16일에는 윤정현과 김병국이 본각에서 모임을 갖고 담당할 곳을 균역청으로 하고 2월 30일 卯時부터 일을 시작할

67) 「內閣日曆」 正祖 5(1781)年 3月 25日.

68) 「內閣日曆」 正祖 6(1782)年 12月 28日.

69) 「內閣日曆」 哲宗 9(1858)年 1月 20日.

것을 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尹定鉉, 金炳國 등의 주관과 別看役 孫滢洙, 吳仁杓, 職調用寫字官 李晉圭, 分類唱準 金仁豐, 文鎮遠, 趙鎮永, 守藏諸員 全啓勳, 刻手邊首 李東郁, 小爐匠邊首 柳相賢 등이 주조의 일에 참여하여 철종 9(1858)년 9월 18일⁷⁰⁾에 완성하여 약 6개월 반이 소요되었다.

그 주조한 활자의 수량은 整理大字가 89,203자, 소자 39,416자이며 韓構字는 31,829자로 전체의 합은 160,448자의 주조를 마쳤다. 더불어 전해의 화제시 남았던 활자가 175,698자로 두 종류의 활자를 類와 部로 나누어 주자소에 보관시켰다.

이러한 기록을 정원용의 「袖香編」에서의 타고남은 활자가 수량의 합이 177,532자, 새로 주조한 활자의 합이 160,700자로 나타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문원은 이와 같이 서적 이외에도 관련된 자료를 다수 수장하여 정조 9년 10월 19일⁷¹⁾에는 왕이 珍藏閣에서 소장된 자료들을 일일이 점검하게 하고 진장각의 자료는 내각이 설립되기 전에 주관할 곳이 없어서 後苑의 작은 각에 임시로 보관하였던 것이니 각신들이 검토하여 적소에 나누어 보관케 하라는 명을 내리므로 이에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옮겨져 수장하게 되었다.

文宗 成宗 元宗三朝御筆	木板 458
宣廟朝御筆	木板 237
孝宗朝御筆	木板 68
肅宗朝御筆	木板 172
景宗朝御筆	木板 10
成宗朝御筆 木鑄字	大字 498자, 小字 5,731자, 諺字4,891자
列聖御製板	10

그러나 진장각의 서적을 분류하던 19일의 다음날 왕은 영화당에서 서호수 등이 입시한 자리에서 어제는 날이 저물어 어제목각, 석각을 상세하게 점검하지 못했으며 봉모당으로 봉안되는 책들이 흩어져 있으므로 날날이 정리하여 봉모당

70) 「內閣日曆」 哲宗 9(1858)年 9月 18日.

71) 「內閣日曆」 正祖 9(1785)年 10月 19日.

건은 당의 內穢과 外架에 봉안시키며 이문원건은 이문원 樓上에 두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4.5 鑄字所의 十字閣

조선 초기의 주자소는 남부 훈도방에 있었으나 정조 18(1794)년 창경궁의 예전 弘文館 자리에 새로 설치하고 監印所로 개칭하였으며, 이후 太宗의 뜻을 기려 鑄字所로 개칭하였다.⁷²⁾

이후 春坊과 桂坊의 直所가 연이어 들어와 자리 잡은 뒤로 주자소를 옮겨 설치할 필요가 생겨, 正祖 24年(1800) 윤4월 13일(乙丑) 直提學 李晩秀가 주자소를 儀仗庫로 옮겨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弘化門 오른쪽 翼廊의 의장고 大廳과 東北衛將所 및 御營軍番所 등 도합 10여 칸의 차지가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조 24년 윤4월 13일에 李晩秀가 올린 글⁷³⁾에 따르면,

주자소는 御定冊子를 編印하는 곳으로 처음의 설치는 태종조의 고사를 따라 시행해온 곳이라 가볍게 다룰 수 없다. 芸館과 비교하여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春桂坊의 直所가 위치상 연이어 붙어있는 관계로 마땅한 옮길 곳을 찾지 못하였다. 만약 弘化門 우변 翼廊의 儀仗庫 대청과 東北衛將所와 御營軍番所를 포함하여 10칸을 합하고 儀仗은 敦化門 좌우익랑이 본래 儀仗의 분소이므로 이를 합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또 북위장소는 본래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軍兵의 公廨들과 바꾸는 편할 듯하다. 春坊은 鑄字所와 같이 붙고 桂坊은 考文館 즉 옛날의 衛從司에 접하게 되며 주자소는 의장고 대청에 접하게 하고 계방직소는 春坊의 東行閣에 붙도록 하는 것이 좋다.

는 의견에 왕은 그대로 실시하라고 지시한 기록으로 이때 주자소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기록인 『漢京識略』에 의하면 정조때 宣仁門 안에 있는 주자소에 奎瀛新府라는 별칭의 편액을 걸었고, 그 뒤 철종 8(1857)년에 板堂庫가 불타 소장하

72) 正祖實錄, 卷41, 正祖 18年 戊寅條.

73) 內閣日曆, 正祖 24(1800)年 윤4月 13日

던 활자와 인쇄도구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 두 가지 기록은 실제로 같은 장소에 대한 것으로 東闕圖나 「東闕圖形」에 의하면 두 문 즉, 홍화문과 선인문 사이에 벽을 따라 行閣이 이어져 있으며 그 중간에 양쪽에 廳으로 된 가로 지르고 있는 건물이 주자소이며 그 끝에 ‘十字閣’이란 건물이 확인된다. 또 선인문쪽으로 연결된 행랑에는 ‘板堂’이란 글자가 보이며 東闕圖形에는 ‘今無’라고 한 것을 보아 철종 8년에 불탄 후에 도형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된 주자소는 순조 5년 4월⁷⁴⁾ 왕과 박종훈과의 문답에서 주자소의 서책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박종훈이 답하기를 十字閣庫 안에 두고 이 모두 새로 찍은 책자이므로 새로 찍은 후에 봉합해서 소장했기 때문에 포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보아 십자각은 주자소의 새롭게 인출한 도서를 보관하던 장소이며 판당고는 인쇄도구 즉 활자와 목판, 그밖의 도구들을 보관하던 장소임을 알 수 있다.

5. 李鈺의 奎章閣賦

5.1 이옥의 생애

奎章閣賦를 지은 李鈺(1760—1812)은 조선 후기의 문인으로 자는 其相, 호는 文無子, 梅史, 梅庵 등이며 본관은 미상이나 「藝林雜佩」에는 延安으로 「海東詩選」에는 전주로 나타난다. 정조 16(1792)년 성균관에 있었으나 정조의 문체반정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문체를 바꾸지 않아 三嘉縣에 소환되고 充軍의 명령을 받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경기도 남양에 내려와 저작활동을 하였다. 저술로는 「藝林雜佩」와 金鑣의 「潭庭叢書」안에 수록된 11권의 산문이 있고 奎章閣賦는 「潭庭叢書」에 수록되어 있다. 문학적으로는 현실에서 소외된 이후

74) 「內閣日曆」 純祖 5(1805)年 4月 27日, 28日.

전반기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은 허무주의 의식과 신비 체험에 관한 기록을 남기는 등 변화를 보였다.

5.2 奎章閣賦

奎章閣賦의 서문에 의하여 이옥이 글을 짓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바, 병신(1776)년 정조가 御眞, 宸章 및 여러 서적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덕궁 북쪽 禁苑 안에 건물을 세운 까닭에 관리들과 학자, 백성 모두 칭송하였다.

외형적으로도 훌륭한 건물이었지만 文을 숭상하는 왕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완성된지 1년이 지난 1785년 정월 상순에 글을 지었다.

또 奎章閣志가 편찬되어 사람들이 널리 구하여 읽게 됨에 따라 설치, 의장과 제도의 대략을 파악하여, 「奎章閣賦」한 편을 지었다.

이옥의 원문은 장문의 글로 편성되어 있지만 본고에서 논의하는 규장각의 제도와 서적보관, 역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⁵⁾

1) 도입부

“客有夢而爲鶴者 凌風二舉”으로 시작하는 이옥의 규장각 서술의 전개

2) 규장각의 성립과 유래

① ...而若其西北一躔 奎曰而名 遠拱東壁 近揖長庚 維天有文 爰集其成...
...그런데 그 서북쪽의 한 궤도에 奎(奎)라고 이름한 별이 있어 멀리 동벽성에 공수하고 가까이 장경성 에 읊한다. 아! 하늘에 문(文)이 있어 이에 그것을 집성하였다네...(중략)

② ...我聞奎章 亦在乎人 其誰章之 惟聖吾君...
...내 듣건데 규장은 또한 사람에게 있다 하니 그 누가 그것을 드러내는가?

75) 이옥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옥전집1」(서울: 소명출판, 2001), 89-121에서 발췌수록.

오직 성인이신 우리 군주라네...(중략)

③ ...爰峙一閣 以象奎躔 以倣中華 以述祖先...

...이에 한 각을 우뚝 세워 규성의 별자리를 본뜨고 중화를 모방하여 조상을 소술한다...

3) 중국의 서적 보관 제도

....有國之閣 自古惟然 周人有秘 守以耳仙 虎殿漢世 麟室唐年 爭華競麗 埒彼西崑 宋氏因之 宸藻是安 龍圖天章 藏以世分 下逮皇明 尤重其官 異爲內閣 文華文淵 雲漢斯偵 群龍斯蜿 萬寶所儲 小西之山 豈徒爾也 文化攸關...

...나라가 있으면 각이 있으니 예로부터 그러했네. 주나라 사람에겐 비각이 있어 이선(노자)으로 그곳 을 지키게 했고, 백호전은 한나라 시대요 기린실은 당나라 시대인데 그 화려함을 닮아 저 서곤과 비등하였다. 송나라가 그것을 잇달아 신조를 여기에 봉안하였네. 용도각과 천장각은 그 소장을 시대로써 나누었네. 아래로 명나라 황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그 관직을 중시하여 특별히 내각을 만드니 문화전과 문연각이라. 은하수 이에 유난히 밝고 못 용들 이에 꿈틀거리네. 온갖 보배 비장된 곳 소유산이라 한갓 그것뿐이리요? 문물을 주고 받음에 관계된 것이라네...

4) 조선시대의 역사적 배경

....余惟小華 厥與之班 一有不若 恥在東民 肆昔我莊憲大王之時 治存內修 謨裕後昆 蔚變齊魯 陋視夏殷 筵臣建奏 盍閣之尊 麟趾之東 實相禁園 木天石渠 庶見其完 宮暉先暮 恨入梧雲...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 소중화가 그와 더불어 대등한 것이라. 하나라도 같지 못함이 있으면 부끄러움이 동쪽 우리 백성에게 있는 것이라. 그런데 예전 우리 장헌대왕(세종) 때에 치도는 내수에 중점을 두고 모우는 후손을 넉넉하게 하였네. 제나라 노나라를 울연히 변화시키듯 하나라 은나라를 고무하게 보듯 경연의 신하들이 건의해 아뢰기를 어찌 각을 설치하지 않으렵니까? 인지당의 동쪽, 실로 금원에서 터를 보았네. 목천과 석거각이 거의 그 완성을 보게 되었네. 궁의 빛이 먼저 저무니 창오의 구름에 한이 들어가네...

5) 숙종대의 시작

....亦奧肅祖 丕承光前 于何未遑 慨古咨嘆 乃建小構 宗寺之間 列聖手澤 斯焉是拚 飛百科斗 舞蚪漂鸞 乃煌璇墨 以賁其顏 蒸虹斗射 光氣爛爛 然惟

斯閣 既窄且偏 文之方盛 無以稱焉 蓋其制勑 以不備 儀設以不全 藏無他書 守無定員者 豈文物 未闡之故也...

...또한 저 숙종 임금께서 크게 이어 선대를 빛내는데 어찌하여 겨를이 없었던고. 지난일을 슬퍼하며 탄식하였네. 이에 작은 건물을 세우니 중정시의 사이라. 역대 임금의 수택들이 여기서 만들어졌네. 비백채와 과두문자는 춤추는 교룡이며 높이 떠도는 난새라네. 이에 황황한 보묵으로 건물의 앞면을 꾸미니 무지개를 찢게하고 복두성을 쏘아 광채와 기운이 찬란도 하였다네. 그러나 이 작은 좁고 또 외진 곳에 있어 문화가 바야흐로 융성하여지매 그것으론 걸맞지 않았네. 대개 그 제도는 시작되었으나 갖추지 못했고 그 의식은 설치되었으나 온전치 못했네. 보관하는데 다른 서적이 없었고 지키는데에 정원이 없었던 것은 그 문물이 찬양되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6) 정조대 설치의 위치와 외형

① ...禁苑之北 既景且基 密邇映花堂咫尺 深嚴瑞蔥臺一陲 地既與之以所 天又假之以時...

금원의 북쪽에 이미 경치 좋고 또 터도 좋아 영화당에서 지척으로 가깝고 서총대 한 모퉁 이에 깊고도 엄숙하네. 땅이 이미 장소를 주었고 하늘이 또 때를 빌려주니...(중략)

② ...櫟集五鳳 壁戰九螭 神將倚柱而掄腕...

대들보에는 봉새 다섯 마리 모였고 벽에는 이무기 아홉 마리 싸우네. 신장이 기둥에 의지해 팔을 내두르고...(중략)

③ ...不陋不泰 不鋸不卑 展也寶閣 聖人之爲 於是樓名宙合 扁揭梔南 軒上有軒 楹再其三 寔爲正閣 克華且深 眞容穆穆...

누추하지도 화려하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비소하지도 않네. 진실로 이 보배로운 작은 성인이 만드신 것이라 이에 누의 이름을 '주합'으로 하여 편액을 미두(楣頭)의 남쪽에 걸었네. 집 위에 또 집이 있어 굵은 기둥 세 개가 거둬 있는데 이것이 정각(正閣)이니 능히 화사하면서도 또 깊숙하네. 진용은 온화하고 숙연한 채...(중략)

7) 소장자료

① ...丹幘御榻 碧帷護檐

붉은 그림 족자는 어담위에 모셨고 푸른 휘장 처마를 감쌌으니...(중략)

② ...又復宸章閣 寶翰載函

또 다시 임금의 글은 책상에 보존하고 보배로운 문서는 함에 쌓았네...(중략)

③ ...間嘗論君人之文 自勅天薰風之吟 下以并漢唐宋明 而其盛莫與上參 求之於墨藪筆苑 亦可以軼古超今 袞安紅錦 軸設黃金 光輝所發 星斗羅

森 冊寶印章 尤大且嚴 并藏一室 或几或龕 宜千萬歲 鎮國無厭...
...일찍이 임금 노릇한 분들의 문장을 논해보건대 칙천과 훈풍의 음영으로
부터 아래로 한당송명을 아울러서 그 성대함 더불어 서로 비교할 수 없고
묵수 필원에서 견줄을 구한다 해도 또한 고금을 뛰어넘을 만하네. 보자기
는 붉은 비단으로 안치하였고 축은 황금으로 만들었다. 광휘가 발하는
바에 별들이 삼삼히 나열되었는데 책보와 인장은 더욱 크고 위엄이 있네.
이들 모두 한 방에 보관했는데 책상에 엮거나 감실에 넣었다. 마땅히 천추
만세토록 나라를 진압함이 끝이 없으리라...

8) 봉모당과 소장자료

...西南有堂 奉謨斯瞻 兩夾斯翼 寶榻香沈 一十九世 聖祖所簽 文之噩噩
詩之瀾瀾 筆而楷書篆書草白 畫而花竹蟲禽 教誥之所以貽謨 顧命之所以
傳心 銀潢玉支之牒 蘭臺金櫃之籤 于架于案 于帕于奩 于以密罩 于以敬緘
每一披翫 孝思不任 如羹如膾 盥而後拈 保有萬世 東國之琛...
서남쪽에 건물이 있는데 봉모당이라고 보이며 양쪽 협실은 날아오를 듯
솟았고 보탑에는 향기가 서려있네. 십구 대에 걸쳐 성조들이 친히 쓰신 바
문장의 악약함(맑고 곧은 모양)과 시의 범범함(알맞고 적당한 소리)이라
글씨에는 해서 전서 초서 비백이요, 그림에는 화 죽 충 금이라 교고로서
끼친 훈모와 고명으로 마음을 전하신 것이네. 은황옥지의 첩과 난대 금궤의
침을 시령과 책상에 얹고 파와 상자에 넣어 빈틈없이 싸고 경건히 봉하였네.
매양 한 번 펼쳐 완상할 때면 효성된 생각을 진정키 어려워 국에서 보듯
담에서 보듯 손을 닦은 뒤에야 집어든다. 만세토록 보존하여 동국의 보배가
되리...

9) 열고관과 개유와

...離方有構 薨霽相接 觀閣古而既高 窩皆有而乍挾 或層軒而連疊架 或暖
閣而深闔 爰侍群書 以資涉獵...
정남방에 건물이 있는데 용마루와 처마가 서로 접하였다. 열고관은 이미 높은
데 개유와는 조금 겹으로 있네. 혹 층헌에 연결한 서까래요. 혹 난간에 심수한
창문이라. 여기에 온갖 서적 구비하여 섭렵의 바탕이 되게 했으니...

(1) 서책의 분류

...類分經史子集 部別丙丁乙甲 其書則史載歷代之蹟 經垂群聖之業 智士
異人之子 忠臣良輔之集 秦漢哲匠之家 唐宋鉅公之什 百家諸流之所著述
千古群儒之所編輯 蟲魚草木之所箋 禮樂儀章之所笥 以至星歷地誌 道經

兵法 物譜技訣 畫卷筆帖 識緯稗官 仙卷佛笈 神鬼之怪 藝術之雜 天上之藏 海外之拾...

그 유를 경사자집으로 나누고 그 부는 갑을병정으로 구별했다. 그 책들중 사(史)에는 역대의 사적이요, 경(經)에는 여러 성인의 업적이라 지사 이인의 확실인 자(子)와 충신양보의 시문인 집(集)이라네. 진한시대 철장의 명가와 당송시대 거공의 유습이 있고 백가 여러 유파의 저술한 것과 천고의 못 유자들이 편집한 것이요. 층어 초목에 대한 주소와 예약 의장에 대한 차룩이요. 그리고 천문역법과 지지, 도교경전과 병법, 물보와 기결, 화보와 필첩, 참위서와 패관잡설, 신선에 대한 서책과 불경, 신귀의 기괴함과 예술의 압박함에 해당되는 것, 천상에서 소장했던 것, 해외 여러나라에서 수습했던 것들까지...

(2) 서책의 외형과 관리

...有萬其級 或珠其籤 或繡其匣 或香其架 或錦其囊 或花其帙 或雲其篋 積成群玉之岡 環作衆香之堞 芸煙青而壁魚 香滿室而長狹 然而此猶遠購燕市 華本之合..

....그 등급은 만에 달한다. 혹은 그 첩에 구슬을 달고 혹은 그 갑에 수로 꾸미고 혹은 그 시렁에 향을 놓고 혹은 그 책갑을 비단으로 싸고 혹은 그 책질에 꽃무늬를 입히고 혹은 그 상자를 구름무늬로 장식한다. 쌓인 것은 군옥의 언덕을 이루고 돌린 것은 중향의 성(城)이 되네. 운에서 나는 푸른 연기 좀벌레를 막아주고 그 향기 방에 가득하여 오래도록 젖어든다. 그런데 이 책들은 멀리 연시에서 중화본을 모은 것이라....

10) 서고

...若其東籍所藏 別有西庫屹立 多或過之 類或相襲 巧曆握籌 不能百十 積金齊斗 寶猶莫及 輝輝玉印 是款是踏 煌煌牙牌 以出以入 至尊所繙 香留卷葉...

....우리나라 책들을 소장한 곳은 별도로 서고가 있어 높이 솟았으니 많기로는 혹 저쪽보다 더하고 종류로는 혹 서로 겹치기도 한다. 역산에 능한 이가 산가지를 잡는다고 해도 백에 열도 헤아릴 수 없을 것이요. 황금을 쌓아 북두 높이에 닿는다 해도 그 보배로움 오히려 이에 미치지 못한다. 휘휘한 옥인으로 여기에 관지를 찍고 황황한 아패로 책 출입의 표시로 삼는다. 지존께서 펼쳐 보신 바 그 향이 갈피마다 서려있다...

11) 서향각

....庫之梢南 以軒以閣 舊名書香 九楹是市 每當曝晒 此焉移榻 購命有適

多猶不畜...

....서고의 조금 남쪽에 현과 함으로 된 건물이 있으니 옛 명칭은 서향각으로 아홉 기둥이 둘러 있는데 매양 포쇄할 때에는 이곳으로 탐(榻)을 옮긴다. 건물들은 각각 쓸모에 맞아 많지만 겹치지 않는다...

12) 외각과 활자 인쇄

....繫彼外閣 不同而同 秘之沁都 慮以芸館 剗剗是供 或創或沿 越以類從...

....아! 저 외각은 내각과 다르면서 같은 것이다. 심도(강화도)에 비장시켜 운관을 귀속시켜 출판을 담당케 하였는데 새활자를 만들거나 옛 것을 쓰기도 하되 같은 종류끼리 사용케 한다...

13) 이문원

....又是直院 維禁之中 瀛館之右 虎門之東 摘文之院 邇于九重 白玉其堂 青瑣其牕

....또 직원은 오직 금중에 있는데 영관(홍문관)의 오른쪽이요 호문(금호문)의 동쪽이라 그리고 이문원은 임금님의 처소 가까이 있어 그 당(堂)은 백옥으로 하였고 그 창은 청쇄로 새겼네...

14) 규장각의 각료

....雖前修之選湖 榮猶莫其斯隆 又復抄啓之官 經藝是通 早年黃甲 是敏是聰 爰試講製 月課其功 若漑嘉樹 煽彼文宗 檢書之官 詞翰兼工 落下才子 拔乎墨叢 供給文園 技竭雕蟲 歌詠聖恩 幸時之逢 筆人畫客 律官書童 下逮胥吏 人無苛充

....비록 선현들의 호당의 선발도 영광스러움 오히려 이와 같이 융성치는 못했으리. 또 초계문신은 경진과 문예에 두루 통한 이들이며 이른 나이에 황갑으로 뽑혀 민활하고 또 총명하다. 이에 강서와 제술로 시험하고 달마다 그 공부를 평하여 좋은 나무에 물대는 것과 같이 하고 저 문종이 되도록 고취시킨다. 그리고 검서관은 사장과 필한에 겸하여 능한 이들이며 낙양의 재능 갖춘 사람으로 문인묵객의 무리에서 뽑아 문원에 공급하니 기예는 조충을 다하고 성은을 노래로서 칭송하며 때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긴다. 필인과 화객, 율관과 서동으로부터 아래로 서리에 이르기까지 구차하게 채워진 사람이 없었다...

15) 정조의 관심과 정책

(1) 정조의 관심

....久矣內閣 國之所崇 奎章閣之制度 措置於斯備矣 而於是乎 惟我聖上 當殿宮問寢之後 際啣宰退食之初 池邊送蹕 花外回輿 於斯周覽 於斯燕居 于是時也 聖人豈無思歟 披寧考之舊訓 撫烈祖之遺書 優然如見 噫噫歎歎 根天之孝 久猶藹如 繼述之治 斯焉益圖 堯中舜精 武烈文謨 前後一揆....

....오래 전부터 내각이란 나라에서 숭상하는 바이지만 규장각의 제도와 조치는 이에 이르러 갖추어졌다. 이에 우리 성상께서 전 궁의 문침(잠자리에 대한 문안) 뒤 그리고 재상이 퇴직한 즉시에 즈음하여 연못가로 자리를 옮기시고 화원 밖에 어여를 돌려 이에 두루 관람하고 이에 편안히 거처한다. 이런 때에 성인이 어찌 생각이 없겠는가. 선왕의 교훈을 펼쳐보고 열조의 남긴 책을 어루만진다. 애연히 만난 것과 같으니 훗때 슬프도다. 하늘에 뿌리한 효도는 오래되어도 정성스럽도다. 계술하는 치도는 여기에 더욱 힘을 쓰니 요임금의 중정함, 순임금의 정일함, 무왕의 공열과 문왕의 모범 앞뒤 모두 하나의 법도로...

(2) 각신과 학문장려

①諸書而攷訂 遵正路而範驅 嗟叔季而不有 宛兄義而第虞 又復春花秋菊 美景方殊 群賢蛺蝶 整簪曳裾 論前星之結餘 問治不而都俞 忘簾陞於尺五 若父子之怡愉 傾獸樽其酒暖 閣臣躍其庭趨...

....여러 책을 곁에 두고 상고하며 바른 길을 따라 규범에 맞게 달리니아! 숙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마치 형은 복희, 아우는 우순이라. 또 다시 봄꽃과 가을 국화, 아름다운 경치 바야흐로 어여쁨에 여러 명사들 길게 늘어서서 잠을 정돈하고 소매를 끌면서 전성의 도의 실마리를 논하고 치란을 물으며 대답을 주고받으니 염혜가 가까움을 잊고서 마치 부자처럼 화락하다. 수준을 기울이니 술은 따뜻한데 각신들 재빠르게 뜨락에서 추창하고...(중략)

②則體之東皇 訪于臣鄰 求才之念 於斯益新 禁苑雨過 芳草爭欣 陰厓陽岸 一色羅裙 則法彼造化 哀此芸芸 施民之政 於斯益均

동황을 본받아서 신린에게 자문하니 인재를 구하는 마음 이에 더욱 새롭도다. 금원에 비가 지나가자 방초가 다투어 기뻐하는 듯 그늘진 벼랑과 양지바른 언덕엔 비단치마 일색이라. 저 조화를 본받아 이 많은 서민들을 불쌍히 여기니 백성들에게 베푸는 정사 이에 더욱 고르도다...

(3) 정조의 인재 등용과 규장각의 기능

- ① ...務農之典 於斯益勤 觀德抗侯 武夫揚神 箭落紅心 鼓動旗翻 則治在張皇 念我三軍 詰戎之戒 於斯益存 佳節試士 羅鳳蒐麟 麗策銘律 各以其倫 則燭盡詞圓 能者之禮 於斯益文...
- ...농사를 힘쓰는 행정 이에 더욱 부지런하도다. 덕을 보며 과녁을 다투매 무부들의 정신이 고양되고 화살이 홍심에 떨어지니 북이 울리고 깃발이 나부긴다. 정치는 장황육사에 있으니 우리 삼군을 축넘할지라. 오랑캐에 대비하는 경계 이에 더욱 마음에 두게 되리라. 좋은 계절에 선비를 시험봄에 봉황이 벌여 있고 기린이 모여드는데 여, 책, 명, 율을 각각 그 부류대로 한다. 촛불이 다되고 문장이 원만해지니 인재를 조성하는 규례 이에 더욱 문채롭도다...(중략)
- ② ...蓋以爲寶殿法宮 人主所御 鸞破西掖 詞臣所住 敷文顯謨 御書是護 天祿白虎 秘書之處 各有所適 莫能相與 惟奎一閣 諸美是具 非古書無以與學 非深閣無澄慮 雖聖質之天縱 閣亦不爲無助...
- ...대개 보전과 법궁은 임금께서 기거하시는 곳이요, 난파와 서액은 사신이 머무는 곳이다. 부문각과 현모각은 어서를 보호하는 곳이요, 천록각과 백호전은 비서가 있는 곳이라. 각각 맡은 바가 있어서 서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이 규장 일각은 여러 좋은점을 다 갖추었다. 고서가 아니면 학문을 닦을 수 없고 깊은 각이 아니면 생각을 밝힐 수 없으니 비록 임금의 자질은 하늘이 준 것이나 각 역시 도움됨이 없을 수 없다...

16) 맺음부: 규장각과 정조의 위대함에 대한 찬탄.

6. 맺음말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규장각의 제도 정비 및 「奎章閣志」의 편찬과 관련하여 초기단계의 진행상황으로부터 완성본인 甲辰新編本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조와 각신간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교서관과의 통합문제, 각신의 겸임문제, 재정조달 문제, 각종 제도의 규정 성안, 閣誌의 수정문제 등에 대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완전한 편람을 만들기 위하여 왕과 각신들의 노력을 각지 완성의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정조 이후 규장각의 서적관리제도를 순조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의춘 문고는 이미 포화상태가 된 서고 등에서 옮겨온 장서처로서의 기능을 하였으며 동이루는 이문원의 장서처로 정조 9년에 봉모당의 5천여 권을 비롯한 여러 책을 옮겨 보관하고 있었고, 주자소의 십자각은 새로 찍은 책들을 보관하던 장서처로서의 기능이 있었음을 밝혔다. 또 서고, 열고관 등을 다루면서 책의 이관과 정리, 보관에서 내부의 목록으로 이관·소장책과 점검하고 보관상태가 나쁜 책들을 별도 목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내부서적에 대한 두 건의 목록 즉 「奎章總目」과 「閣古館書目」에 대한 성격을 밝히고 당시 순조는 두 목록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앞으로의 장서편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규장각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하여 관찬이 아닌 당시의 문인에게 어떻게 비치되었을까는 관점에서 정조대에 문체 등의 이유로 소외되었던 이옥이 1785년에 지은 「奎章閣賦」를 통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을 우회적으로 살펴서 당시의 평가를 보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日省錄」

「內閣日曆」

「正祖實錄」

<논문>

남권희, “文獻閣과 文獻閣書目の 分析.” 「도서관학」, 11집(1984).

安光來, “甲辰新編 奎章閣志」研究: 圖書館的 機能과 司書의 役割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86.

이옥 저.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역주 이옥전집1. 서울: 소명출판, 2001,

89-121.

李離和, “奎章閣小考: 奎章閣志를 중심으로 본 概觀.” 『奎章閣』, 第3輯(1979. 12), 149-165.

李鐘默, “조선시대 왕실도서의 수장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6호(2002. 12), 5-39.

<표 1> 「奎章閣志」 권 1의 내용

再草本(上篇)		初草本(卷之一)		完成本(卷一)	
建置	稽考 謨訓 經理	建置第 一	內閣 屬閣 外閣 直院	建置第 一	內閣(附江都外閣) 直院 外閣
形勝	象形 局勢 塘沼	制度第 二	堂宇 門廡 扁額		
堂宇	樓閣亭臺 門闕				
扁額	墨妙 題語 樑文				
職官	叙職 差除 品秩 例兼 肅拜 出入 頒賜 起居 入直 公會 褒貶 筭疏 啓目 草記 箋文 關移 用牌 前導	職官第 三	提學 直提學 直閣 檢校 待教 雜織 (司卷 領籤 閣監 檢書官 檢律) 閣屬	職官第 二	差除 例兼(附考試)
		奉安第 四	謨訓 御眞	奉安第 三	奉謨訓 奉御眞
		編次第 五	校正 會粹 分類 系年錄 語錄	編次第 四	會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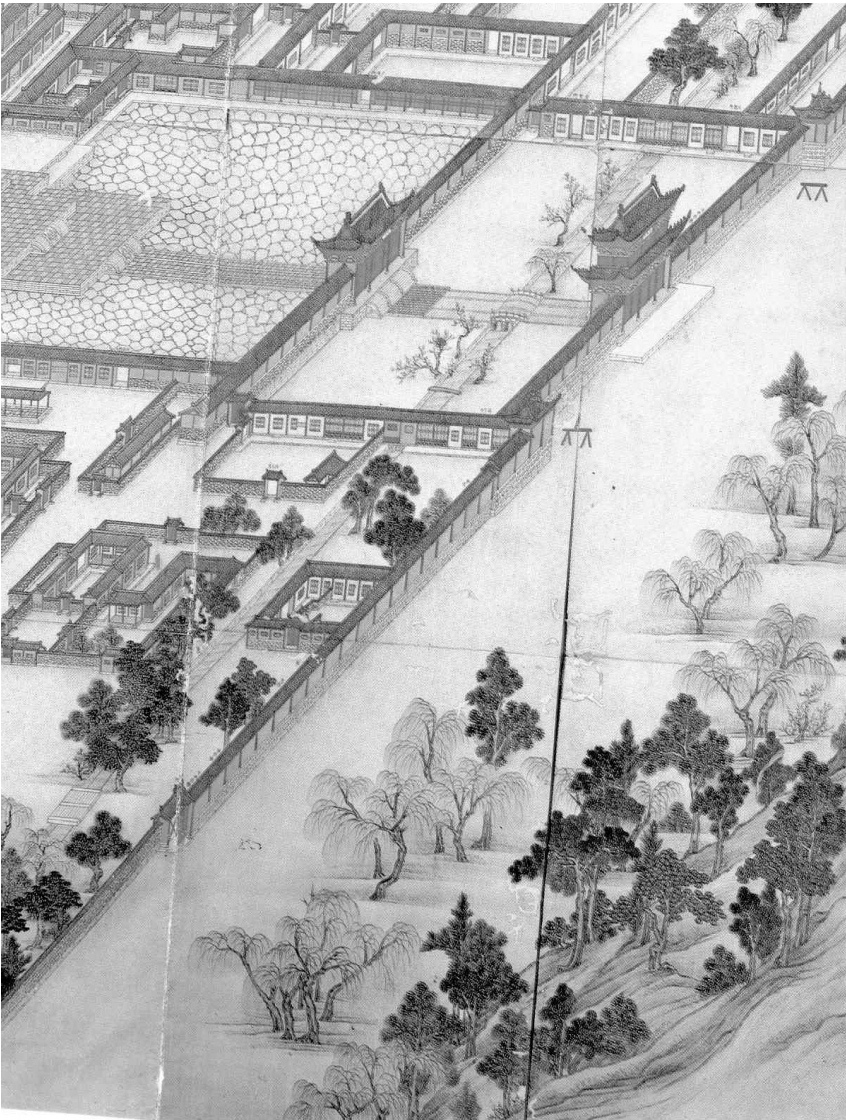
「奎章閣志」의 편찬과 19세기 奎章閣 서적보관제도

			繕寫 奉藏 刊印 頒賜		繕寫 奉藏 刊印
器用	寶章 鑄字 牙牌 通符 附摛文院器 用	尊閣第 六	藏書 校書 進書 曬書	書籍第 五	藏書 編書 進書 曬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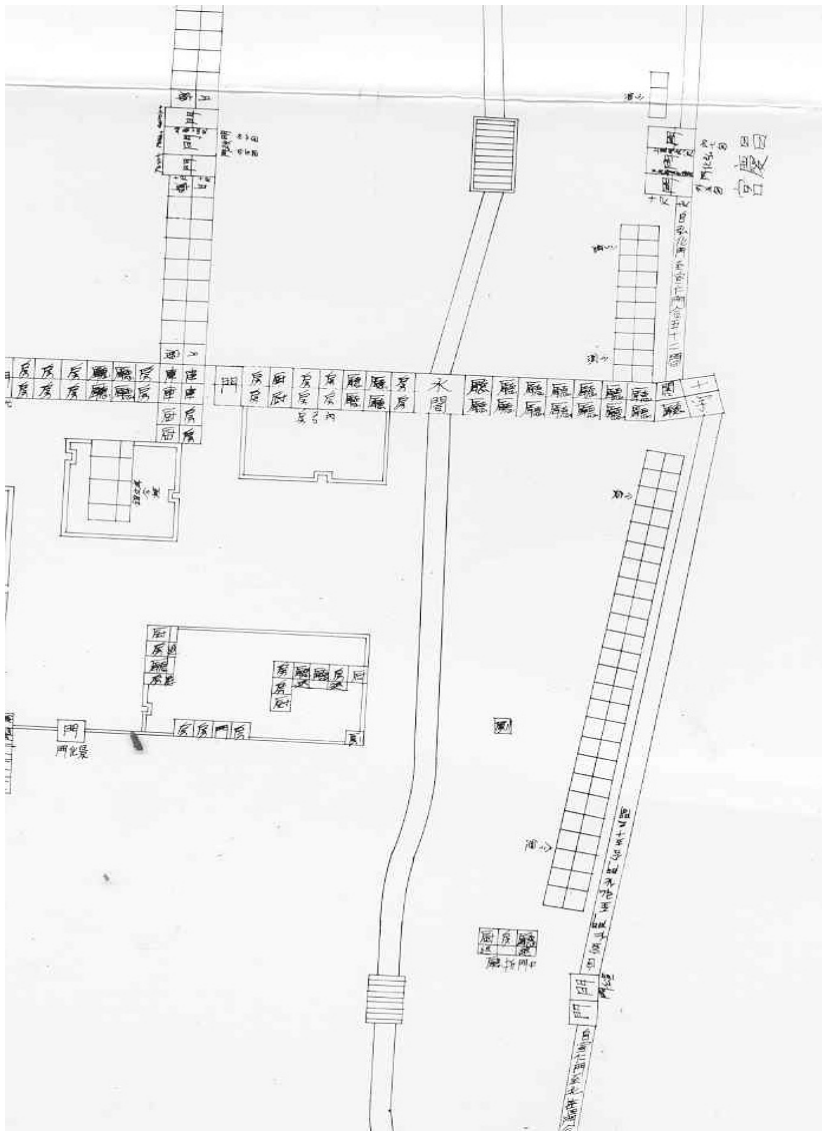
<표 2> 「奎章閣志」 권 2의 내용

再草本(下篇)		初草本(卷之二)		完成本(卷二)	
		事例第七	除拜 斑序 出入 豹直 考功 起居 晋接 故事 獻議(博考) 代撰(應製) 進箋 筭疏 草記(啓辭 啓目 狀啓) 下諭(關移) 日曆 殿最 隨駕 雜式	教習第六	抄啓 講製 親臨 賞罰
		培養第八	抄啓 試講 試製 親臨 在外 賞罰	院規第七	宣敎(附肅拜) 斑序(附隨駕) 豹直(附守官) 殿最(附考功) 起居(附晋接) 獻議(附博考 故事) 代撰(附應製) 進箋

					劄疏 奏啓 諭旨(附公移) 日曆 雜式
書策	藏書 奉書 曬書 編書 寫書 印書 購書 校書 粧書 頒書 考書 進書	文物第九	器用 故實	事實第八	宸藻 紀蹟
進接	宣召 宣醢 宣飯 曲宴 賡載 燕射 幸院 事實				



<그림 1> 「東闕圖」의 주자소, 십자각, 판당고의 위치



<그림 2> 「東關圖」의 주자소, 십자각, 판당고의 위치